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4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 김예지 · 임종득 · 최수진

서천호 · 김선교 · 김상욱

김장겸 • 박덕흠 • 김대식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1호가 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	
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	
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	2026년 12월 31일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u>2천시시</u> 이하인	가 <u>3천시시</u>
승용자동차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생 략)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 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 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 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 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 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

	(2)	•	(3)	(ਨੂੰ	현 행	과	2	음	.)		
제	29조	<u> </u>	국기	유	공기	각 -	등	에	대현	한	감
	면)	1	~	3	(현	행 ɔ	<u></u>	같음	+)	
	4										

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
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
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
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u>2천시시</u>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다. (생 략)

2. ~ 4. (생 략)

⑤ (생 략)

<u>2026년</u>
12월 31일
1
가 <u>3천시시</u>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